

서울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2나200971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B

피고, 항소인 1. C 주식회사

2. 유한회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유태용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7. 14.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가합576015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원고에게 1,155,199,8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상표권에 관하여 2019. 9. 19.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유한회사 D은 피고 C에 같은 목록 기재 각 상표권에 관하여 각 특허청 2019. 9. 19. 접수 같은 목록의 “접수번호”란 기재 각 해당번호로 마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17행, 18행의 각 “상품권”을 “상표권”으로, 8면 15행의 “증인 H”을 “제1심 법원 증인 H”으로, 15면 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쳐 쓰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7면 7행의 “행담도점, 진접점의 임대인과 각 매장의”를 “진접점의 임대인과 매장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9면 7행부터 10면 9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진접점, 오산점, 양지점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2,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음성, 이 법원의 J, AB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진접점의 임대인인 J이 피고 C로부터 진접점 매장을 인도받고 피고 C에 추가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 일체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건물인도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다만 그 확인서에는 ‘2019. 9. 9.1) 이후 임대인과 피고 C는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오산점의 임대인 측과 피고 C 측이 명도 지연에 따른

임대료를 50%만 지급하는 것으로 구두 협의가 진행된 사실, 양지점의 임대인인 K 주식회사 측이 피고 C 측에 명도 지연에 따른 임대료를 최소한도 2,000만 원(2019. 7. 19.부터 2019. 8. 13.까지 임대료 55,354,840원 중 약 37%)으로 산정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매장의 임차인은 (피고 C가 아닌) 파산회사 내지 원고로서 피고 C가 위 각 매장의 임대인들과 명도 지연 기간 동안의 임대료에 대한 면제 혹은 감액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회사 내지 원고에 대하여도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파산회사 내지 원고가 피고 C와 위 각 매장의 임대인과의 합의 내지 협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위 각 매장의 임대료를 면제 내지 감액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오히려 갑 제18호증의 2에 의하면, 양지점의 임대인이 상품반출일까지 일할계산한 임대료를 원고에게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매장에 관하여 원고의 손해가 일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에 관한 피고 C의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다만 피고 C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뒤에서 보는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사유로서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추가 판단

가.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약정금 청구 관련)

1) 피고 C의 주장

이 사건 매매대상 자산의 반출 과정,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액, 피고 C와 각 매장 임대인들의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손해배상예정액의 성격을 가지는 원고의 약정금은 제1심 법원이 인정한 금액보다 더 많이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은 ① 이 사건 매매대상 자산 중 상품 및 비품이 30곳의 매장 등에 분산되어 있고 각 매장 등에 보관된 상품 및 비품의 수량이 상당한 점, ② 제3자의 의견서 제출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서 송달이 2019. 7. 2.에야 이루어져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발생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 C의 반출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판매시기에 따라 판매량에 변동성이 큰 이 사건 매매대상 자산(의류)의 특성, ④ 자체매장인 신갈점과 남양주점의 경우 손해배상예정액이 지체일수 1일당 일률적으로 1,000만 원으로서 다른 매장의 월차임 액수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액인 점, ⑤ 피고 C와 각 매장 임대인들 간의 합의나 협의로 원고가 피고 C의 반출 지연 기간 동안 임대료를 실제로 면제 또는 감액 받았을 가능성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자체매장인 신갈점과 남양주점의 경우 1일당 임료를 50% 감액하여 1일당 500만 원(임차매장의 경우 약정 월차임을 토대로 계산한 일차임)을 1일 손해액으로 하되, 반출기한은 2019. 7. 16.에서 2주 더 연장하여 2019. 7. 30.까지로 한 지체일수([별지 2] 표의 “지체일수”란 기재 각 해당일수에서 14일을 공제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별지 2] 표의 “인정금액”란의 “손해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였다.

검토하건대, 원고 내지 파산회사와 피고 C의 각 지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당시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준의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은 적정하다고 보이고(이러한 감액에는 피고 C가 주장하는 사정도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보인다), 더 많이 감액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의 채무초과 여부에 대한 판단(사해행위취소 청구 관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일인 2019. 9. 19.에 가장 근접한 피고 C의 2019. 9. 30. 자 재무상태표(을 제15호증)를 보면 자산총계는 5,371,746,473원이고 부채총계는 3,555,424,606원으로서, 여기서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임대료 상당 약정금 1,155,199,879원을 공제하더라도 피고 C의 자본총계는 666,121,988원이므로, 위 양도계약 체결당시 피고 C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2) 판단

검토하건대, 피고 C의 2019. 9. 30. 자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 5,371,746,473원에는 재고자산(상품) 3,995,232,266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3,995,232,266원에는 연말 결산 시 반영되는 재고자산의 원가가 미처 반영되지 않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한 재고자산의 실제 가치는 2,133,322,266원(=3,995,232,266원 - 원가 1,861,900,000원)이며, 이러한 사실은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다(피고들의 2021. 10. 28. 자 준비서면 2, 3면 참조). 그리하여 피고 C의 2019. 9. 30. 기준 재무상태표에 피고 C가 주장하는 재고자산 상품의 원가를 반영할 경우 그 당시 자본총계(=자산총계 - 부채총계)가 (-)45,578,133원[(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 5,371,746,473원 - 재고자산 상품의 원가 1,861,900,000원) - 재무상태표의 부채총계 3,555,424,606원]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피고 C의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른 약정금 채무(제1심 및 당심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만 하여도 609,447,619원 상당임)를 추가로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는 더욱 커지므로,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남성민, 판사 백숙중, 판사 유동균

[별지 1]

목
록

번호	출원(국제등록)번호	등록번호	점수 연월일	점수번호	상품분류	상표의 명칭
1			2019.9.19	2019-0640661	16	
2			2019.9.19	2019-0640661	24	
3			2019.9.19	2019-0640661	03	
4			2019.9.19	2019-0640661	09	
5			2019.9.19	2019-0640663	35	
6			2019.9.19	2019-0640661	24	
7			2019.9.19	2019-0640661	18	
8			2019.9.19	2019-0640661	06	
9			2019.9.19	2019-0640661	20	
10			2019.9.19	2019-0640663	35	
11			2019.9.19	2019-0640661	20	
12			2019.9.19	2019-0640661	06	
13			2019.9.19	2019-0640663	35	
14			2019.9.19	2019-0640661	18	
15			2019.9.19	2019-0640661	03	
16			2019.9.19	2019-0640661	21	
17			2019.9.19	2019-0640661	28	
18			2019.9.19	2019-0640661	09	
19			2019.9.19	2019-0640661	21	
20			2019.9.19	2019-0640663	43	
21			2019.9.19	2019-0640661	28	
22			2019.9.19	2019-0640661	06	
23			2019.9.19	2019-0640663	35	
24			2019.9.19	2019-0640661	28	
25			2019.9.19	2019-0640661	16	
26			2019.9.19	2019-0640664	25 35	

[별지 2]

표

순번	보관장소	원차입	입차입	반출일	지체 일수	정구금액	약정손해액	인정금액		
								입차입	지체일수	손해액
1	신갈점	10,000,000 (1일당)	10,000,000	2019. 8. 2.	17	170,000,000	170,000,000	5,000,000	3	15,000,000
2	남양주점	10,000,000 (1일당)	10,000,000	2019. 8. 6.	21	210,000,000	210,000,000	5,000,000	7	35,000,000
3	양지점	60,000,000	1,972,602	2019. 8. 14.	29	58,000,000	57,205,458	1,972,602	15	29,589,030
4	양주점	28,000,000	920,547	2019. 7. 25.	9	8,400,000	8,284,923	920,547	0	0
5	여주점	15,000,000	493,150	2019. 8. 14	29	14,500,000	14,301,350	493,150	15	7,397,250
6	대전점	30,000,000	986,301	2019. 7. 16	0	0	0	986,301	0	0
7	포항점	44,000,000	1,446,575	2019. 8. 27.	42	61,600,000	60,756,150	1,446,575	28	40,504,100
8	팔산점	32,000,000	1,052,054	2019. 8. 14.	29	29,935,484	30,509,566	1,052,054	15	15,780,810
9	안양점	25,000,000	821,917	2019. 9. 16	62	50,000,000	50,958,854	821,917	48	39,452,016
10	오산점	34,000,000	1,117,808	2019. 9. 16.	62	68,000,000	68,000,000	1,117,808	48	53,654,784
11	동탄점	35,000,000	1,150,684	2019. 7. 16.	0	0	0	1,150,684	0	0
12	전점점	16,000,000	526,027	2019. 9. 9.	55	29,333,333	28,931,485	526,027	41	21,567,107
13	금촌점	12,000,000	394,520	2019. 7. 16.	0	0	0	394,520	0	0
14	행당도점	25,475,000	837,534	2019. 7. 26.	10	8,491,667	8,375,340	837,534	0	0
15	익산점	9,000,000	295,890	2019. 7. 16.	0	0	0	295,890	0	0
16	선릉점	9,500,000	312,328	2019. 7. 22.	6	1,900,000	1,873,968	312,328	0	0
17	양재점	65,000,000	2,136,986	2019. 9. 26.	72	156,000,000	153,862,992	2,136,986	58	123,945,188
18	안산점	52,750,000	1,734,246	2019. 9. 26.	72	126,600,000	124,865,712	1,734,246	58	100,586,268
19	사리현점	22,727,273	747,198	2019. 8. 21.	36	27,272,728	26,899,128	747,198	22	16,438,356
20	남부점	31,180,000	1,025,095	2019. 10. 16.	92	95,816,667	94,308,740	1,025,095	78	79,957,410
21	울산남구점	13,500,000	443,835	2019. 7. 19.	3	1,350,000	1,331,505	443,835	0	0
22	대전점	15,000,000	493,150	2019. 7. 9.	0	0	0	493,150	0	0
23		15,000,000	493,150	2019. 9. 30.	76	38,000,000	37,479,400	493,150	62	30,575,300
합계						1,155,199,879	1,147,944,571			609,447,619

1) 진접점의 반출일로서(별지 2 표 순번 12번 참조), 원고는 그 때까지의 임대료 상당의 약정금(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가 정하는 손해배상금)을 구하고 있다.